

# 코로나19 관련 독일의 지원정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독일

이승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 ■ 머리말

코로나19로 명명된 집단 감염성 질환은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전염병의 최상위 단계인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언이 이루어지며 보건과 의료의 영역을 벗어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어느 한 국가 또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외부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 전반에 동시에 동일한 위험 요소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 국가들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확진자 수가 15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1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도 프랑스까지 3개국으로 늘어난 상황이다.<sup>1)</sup> 독일의 경우에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고(2020.4.9 기준 10,869명), 3월 말경부터는 매일 약 5천 명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며, 세계적으로는 네 번째, 유럽에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가 되었다.<sup>2)</sup>

코로나19의 확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독일 정부도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

1) 유럽지역의 코로나19 감염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유럽 질병예방관리본부(ECDC) 참조, <https://www.ecdc.europa.eu/en/cases-2019-ncov-eueea>

2) Robert Koch-Institut, COVID-19-Das Bundesländer, [https://experience.arcgis.com/experience/478220a4c454480e823b17327b2bf1d4/page/page\\_1/](https://experience.arcgis.com/experience/478220a4c454480e823b17327b2bf1d4/page/page_1/)(최종 검색일: 2020.4.6)

<표 1> 유럽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2020.4.9 기준)

(단위: 명)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스페인	146,690	14,555
이탈리아	139,422	17,669
독일	108,202	2,107
프랑스	82,048	10,869
영국	60,733	7,097
벨기에	23,403	2,240
네덜란드	20,549	2,248
포르투갈	13,141	380
오스트리아	12,969	273
스웨덴	8,419	687

자료: ECDC(2020)(최종 검색일: 2020.4.9).

한 각종 제한 조치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까지 급속하게 마비된 상황이다. 일상생활의 이동과 모임조차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은 영업시설 및 생산시설의 운영도 중단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안전, 근로조건 및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도 더 이상 예상과 예측이 아니라 당장 직면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독일 정부와 의회는 질병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한 조치를 연장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측면의 지원정책들도 긴급하게 시행하고 있다.<sup>3)</sup>

## ■ 코로나19에 따른 독일 정부 차원의 이동제한

연방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독일은 각 주정부 단위가 직접적인 정책 시행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와 연합하여 정책 결정에 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방역 및

3)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의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998(2020.3.27), Sitzung des Bundesrates, <https://www.bundesrat.de/SharedDocs/TO/988/tagesordnung-988.html> 참조.

보건 정책적 대응으로서 연방 총리와 각 주정부 수반들이 2020년 3월 12일 결의하였던 「사회적 접촉의 제한에 관한 지침(Leitlinien zur Beschränkung sozialer Kontakte)」은 지난 3월 22일 적용 기한을 4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sup>4)</sup>

이러한 정부 차원의 지침에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 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권고 수준의 규제를 기본으로 하여, 공공장소에 가족 내지 거주를 같이하는 구성원을 제외한 타인과의 회합을 제한하고, 공공장소에서는 물론이고 개별 가정이나 사유 시설에서도 파티 등의 그룹 모임을 불허하며, 식당의 경우에도 테이크 아웃 형태를 제외하고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의 강행적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또한 서비스 내용적으로 상호간 물리적 근접성 내지 접촉이 요구되는 경우, 예를 들어 미용실, 메이크업 스튜디오, 마사지업소, 문신 스튜디오 등과 같은 미용 및 신체 관리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요구되는 치료 시설을 제외하고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극, 영화 및 오페라 극장, 콘서트 홀, 박물관, 전시관, 동물원, 기타 문화시설을 비롯하여, 수영장, 피트니스 스튜디오 등 스포츠 레저 시설들도 영업 중단 대상 업종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한적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과 경찰을 통해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교육 행정체계의 경우에는 연방 단위가 아닌 각 주정부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휴교 또는 개강 연기 등의 조치가 각 주 또는 지역의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 독일의 사회보장 지원정책

### 연방정부의 사회보장 지원법안(Sozialschutz-Paket) 발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기본적으로 의료, 보건 분야와 같이 직접적으로 방역과 치료를

4) Leitlinien zur Beschränkung der sozialer Kontakte(2020.3.22), <https://www.bundesregierung.de/resource/blob/975226/1733246/e6d6ae0e89a7ffea1ebf6f32cf472736/2020-03-22-mpk-data.pdf?download=1>(최종 검색일: 2020.4.6)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 지원 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도, 경제와 고용 등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보호 필요성이 긴급하게 증대된 대상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정책들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기사당(CDU/CSU) 과 사민당(SPD) 소속의 내각 의원들은 신속하게 지원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소위 '사회보장패키지(Sozialschutz-Paket)'로 불리는 법안(Gesetz für den erleichterten Zugang zu sozialer Sicherung und zum Einsatz und zur Absicherung sozialer Dienstleister aufgrund des Coronavirus SARS-CoV-2)을 마련하여 지난 3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였고,<sup>5)</sup> 의회 역시 3일 만에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sup>6)</sup>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실시된 제한 정책들로 인해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불가피하게 생산 또는 영업활동 제한이 수반되면서, 개별 기업들은 단순히 잠재적인 측면에서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일상적인 영업을 중단해야 하거나 기존의 주문마저 취소되는 등 단기적으로 경영상 위기에 처할 확률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영상 위기는 모든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위기를 대비한 예비 자금의 준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사업 또는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단축근로지원금(Kurzarbeitergeld) 또는 파산 급여(Insolvenzgeld)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규모 기업과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긴급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 경영상 위기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고용 불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측면도 고려되었다.

인적 범위의 측면에서는 특히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이들은 실직 등으로 상당 수준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우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정되었다.

5) BT-Drucksache 19/18107(2020.3.24).

6) BGBl. I S. 575(2020.3.27).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대책에 교육 및 보육 기관의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들도 포함됨에 따라 가정에서 해당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자녀가 가정에 머무르는 상황은 부모의 경제활동에도 제약을 가져오는 등 추가적인 영향이 발생함에 따라 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아동수당을 한시적으로 재편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정책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을 위해 연방의회는 연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법안도 3월 27일 지원 법안과 함께 통과시켰다.<sup>7)</sup>

## 사회보장제도에 기초한 지원정책

### 고령자 및 장애인의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

사회보장 지원법안의 내용 중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면, 이미 사회보장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영향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추가 지원대상에는 우선적으로 사회법 제2권(SGB II) 또는 제12권 제3장(SGB XII 3.Kap.)에 근거하여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생활급여를 지급받는 구직자와, 사회법 제12권 제4장에 의하여 기초생활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령자 및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자가 포함되었다.

또한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청 산하의 일선 관청인 고용센터(Jobcenter)를 활용하여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Sozialschutz-Paket Art. 1 Nr. 2; SGB II §67)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 저임금근로자 및 저임금 자영업 종사자의 범위 확대

독일 사회보험 관련 법률들의 총칙에 해당하는 사회법 제4권에서는 저임금근로자

7) BGBl. I. S. 556(2020.3.27).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및 저임금 자영업 종사자(geringfügige selbständige Tätigkeit)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i) 수입이 월 450유로 미만이거나, ii) 1년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또는 70일 이상 근로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다(SGB IV § 8 Abs. 1 Nr.2).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저임금근로자 또는 저임금 자영업 종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의 면제,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그에 기초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의도에 기초하여 저임금근로자 및 저임금 자영업 종사자에 해당하는 요건 중 근로기간에 기초한 기준을 1년 기준 5개월 또는 115일 이상 근로하지 않는 자로 완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자가 직접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Sozialschutz-Paket Art. 3; SGB IV §115). 다만 이와 같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은 2020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이 유지되도록 했다.

## 자녀 보조금 변경 요건의 완화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가정의 생활상도 일시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된 가운데, 가구소득 까지 감소하는 상황이 맞물리게 되는 경우에는, 가정경제가 급격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변화(예: 근로소득 감소, 실직 등)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신속히 자녀 보조금(Kinderzuschlag) 산정에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자녀 보조금 증액 신청에 6개월간의 소득증명을 제출해야 했던 것에서, 최근 1개월의 소득증명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또한 기타 재산 보유 증명에 대한 요건도 완화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Sozialschutz-Paket Art. 6; BKGG § 20).

이러한 요건 완화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단지 1개월분의 소득증명만으로도 자녀 보조금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자녀 보조금은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따라 월 185유로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소득증명 요건 완화 조치는 2020년 9월 30일까지만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 단축근로지원금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 해석의 원칙인 소위 경영위험부담론(Betriebsrisikolehre)(BGB § 615 Satz 3)에 따르면, 노동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해당 근로의 제공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그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사용자가 운영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용자에게는 계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sup>8)</sup> 이와 같은 근로계약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의 운영에 제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원 제도는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사회법 제3권에서 규율하고 있는 단축근로지원금(Kurzarbeitersgeld - SGB III §§ 95-109)이다.

단축근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기존에 이 제도는 건설업과 같이 계절적인 요인으로 사업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거나 주문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업무량이 감소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계되었다(계절적 단축근로지원금(Saison-Kurzarbeitersgeld)).<sup>9)</sup> 즉 사용자에 의해 임금의 삭감과 함께 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SGB III § 95)을 충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실업을 방지하고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이 단축근로지원금제도는 실업보험제도 내에 포함되어 있다.<sup>10)</sup>

8) Joussen(2018), in Rofls/Giesen/Kreikebohm/Udsching, BeckOK ArbR, 48. Ed., BGB 615 Rn.89.

9)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감원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실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시간만큼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역시 단축근로지원금 제도에 포함된다(이직 단축근로지원금(Transfer-Kurzarbeitersgeld)).

10) (Hrsg.) Bundesagentur für Arbeit(2020), Kurzarbeitersgeld, S.11.

비록 단축근로지원금이 위와 같은 계절적 요인에 기초한 고용 위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근로의 단축이 이루어지는 원인을 반드시 계절적 요인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의 운영에 제약을 받게 된 경우와 같이 일시적인 요인으로 근로의 단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단축근로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데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따라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가 발생하면서 해당 사업장에 생산을 위한 근로자의 투입이 중단되거나, 감염된 근로자의 수가 생산에 차질을 빚을 만큼 크게 증가하는 등의 원인으로, 사용자가 임금의 미지급을 전제로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장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단축근로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SGB III § 95). 해당 사업장이 단축근로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의 단축 및 임금 삭감의 대상이 된 근로자이면 계약직이나 파견근로자, 직업훈련생인 경우에도 단축근로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SGB III § 98).

이러한 단축근로지원금은 12개월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SGB III § 104 Abs.1), 해당 지원금의 지급 원인이 해소되어 1개월 이상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12개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지급 기한이 중단된 기간만큼 연장된다(SGB III § 104 Abs.2). 하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지원금의 지급이 3개월 이상 중단되면 기존의 신청 원인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며, 지원금의 지급 재개를 원하는 경우 신규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SGB III § 104 Abs.3).

단축근로지원금의 상한은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의해 근로단축이 이루어지고 지급받지 못하게 된 세후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실업급여의 요율 산정에 있어 인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즉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를 보유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임금의 67%를 지급받게 된다(SGB III § 105).

이 지원 법안을 통해서, 코로나19에 기초한 원인으로 사용자에게 의해 근로의 단축이 이루어지며 단축근로지원금을 수급받게 된 근로자가 기존의 업무와 체계적 유사성이 있는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근로하게 된 경우, 임금 총액 산정에 추가 근로로 얻은 수입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였다(Sozialschutz-Paket Art. 2; SGB III § 421c).<sup>11)</sup> 또한 이 경우 추가적인 일자리에 대해

11) 다만 추가적인 근로에서 발생한 급여와 단축근로지원금 및 근로단축으로 삭감이 이루어진 임금액의



서는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도 면제하도록 하였다(Sozialschutz-Paket Art. 2; SGB III § 421c).

## 교육 및 보육기관 운영 중단에 따른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시설은 단지 영업이나 생산시설만은 아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 및 영유아 보육시설 역시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상적인 근로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며, 그에 따라 소득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전염예방법(IfSG)의 적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해당 법안에 기초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모인 근로자가 12세 미만의 자녀 양육을 위해 출근할 수 없게 된 경우, 최장 6주까지 세후 월급여의 67%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최대 2,016유로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근로면제의 수단들을 모두 활용하였으며, 양육을 위한 대체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 기타 코로나 대응 업무와 관련한 개정 사항

### 근로시간 규제의 일시적 완화

사회보장 지원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정책들이다. 그에 따라 질병적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내용들은 이 지원 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보호 필요성이 발생 또는 증가한 대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 되고, 그러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동법 또는 사회법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이 지원 법안에 부수적인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특히 한시적으로 근로시간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코

합계가 기존 일자리에서 근로단축이 이루어지기 전 약정된 급여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로나19에 대응하는 공공 안전, 질서 유지 및 의료, 보건 분야 인력에 대해서는 연방노동사회부(BMAS)가 연방상원의 동의 없이도 초과근로가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적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활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생필품을 생산, 공급하는 근로자도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 조치에 포함시켰다(Sozialschutz-Paket Art. 8; ArbZG §14 Abs. 4). 이번 규제 완화조치는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연방노동사회부(BMAS)가 해당 시행규칙을 공포함에 있어 요구되는 연방상원의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신 근로시간의 규제가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고려하여 연방보건부와의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원시설 및 인력에 대한 보조금

또한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제공된 시설 및 투입된 인력에 대해 지급될 수 있는 보조금 또는 사용된 비용의 상환 청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법률(Gesetz über den Einsatz der Einrichtungen und sozialen Dienste zur Bekämpfung der Coronavirus SARS-CoV-2 Krise in Verbindung mit einem Sicherstellungsauftrag)의 제정도 사회보장 지원법안의 내용에 포함되었다(Sozialschutz-Paket Art. 10).

## 지원 및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경제안정화기금법(WStFG)

2020년 3월 27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코로나 관련 법안에는 연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법안<sup>12)</sup>도 포함되었다. 추가 예산은 기업, 병원 및 근로자 등에 대해 재정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자원 마련을 명목으로 우선 1,225억 유로가 추가로 편성되었다. 반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세입 규모는 약 335억 유로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총 1,560억 규모의 예산 총당이 필요한 상황이며, 해당 예산은 연방정부의 채무로 총당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sup>13)</sup>

12) BGBl. I. S. 55692020.3.27).

13)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의 재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GG)에서 국내 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부채 비율을 규제하는 소위 채무브레이크(Schuldenbremse)'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추가로 편성된 예산은 우선적으로 이미 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지출 명목이 확정된 부처에 약 115억 유로가 배정되었으며,<sup>14)</sup> 나머지 예산 중 약 60억 유로는 연방정부의 채무로 추가예산을 편성하면서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으로 산정되어, 추가 예산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175억 유로만 지출 명목이 확정된 상황이다. 아직은 구체적인 지출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약 1,050억 유로는 현재 일반회계로 배정되어,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후 경기 부양책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로 배정된 예산을 향후 고용 활성화 지원,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자본시장의 안정화 등 경기안정을 위해 필요한 용처에 지출하기 위한 법적인 틀에 해당하는 경제안정화기금법(WStFG)<sup>15)</sup>의 제정 역시 코로나19 관련 지원 법안의 하나로 포함되어 다른 법안과 함께 3월 27일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을 기초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 긴급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독일 경제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2020년 2월 말부터 사실상 경제위기의 출발점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대상 물품 및 자재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각 산업분야의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고, 소비재 판매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등 경제활동의 흐름이 급격하게 붕괴되는 상황으로부터 독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또한 사회적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감소 및 내수시장 경색 등과 같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와 같이 해당 규제를 벗어나는 예외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연방하원의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GG Art. 115).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연방하원 의회의 동의 절차는 추가경정예산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처리된 지난 3월 25일 함께 진행된 바 있다.

14) 추가경정예산은 연방노동사회부(BMAS)에 약 77억 유로, 연방보건부(BMG)에 약 31억 유로,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에 2억 유로, 연방교육연구부(BMBF)에 2억 유로, 국방부(BMV)에 1억 5천만 유로, 외무부(Auswärtiges Amt)에 5천만 유로, 연방내무건설주택부(BMI)에 3천만 유로, 연방재무부(BMF)에 1천만 유로, 연방식품농림부(BMEL)에 1백만 유로의 배정이 이루어졌다(BGBl. I. S. 556, 2020.3.27).

15) BGBl. I. S. 543(2020.3.27).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실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경제성장률, 실업률, 생산 지표 등과 같은 주요 경제지표들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독일 경제의 심각성은 DAX 지수가 약 40일 만에 26.7%나 급락(2월 19일 13,789p → 3월 31일 9,935.84p)한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최근 독일 경제연구소(ifo)에서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예측한 연구 보고서<sup>16)</sup>를 통해 다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개월 동안 독일의 경제가 섰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손실의 규모는 시나리오에 따라 2,550억~4,950억 유로에 달한다. 연간 GDP로는 약 7.2%포인트에서 14%포인트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만약 지금 같은 섰다운 상황이 3개월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손실액 규모가 3,540억~7,290억 유로(GDP 성장률: -10.0%p~-20.6%p)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미 진행된 상황만으로도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은 단순히 보건과 의료 차원의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독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 1,225억 유로의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각종 지원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한 바 있다. 다만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들이 언제까지 연장될지 예측할 수 없고, 또한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도 선불리 예단할 수 없는 가운데, 독일이 현재까지 마련한 지원정책은 생존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회보장적 측면의 한시적 지원정책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한 아직 일반 시민들이 완전히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현재의 지원정책들은 출발점에 불과한 수준으로 보이며, 경기 불황의 수준과 영향에 따라 아직 남아 있는 약 1,00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추가적인 정책들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LI**

16) Dorn, Florian et al.(2020), "Die volkswirtschaftlichen Kosten des Corona-Shutdown für ausgewählte europäische Länder: Eine Szenarienrechnung, ifo Schnelldienst digital 3/2020," <https://www.ifo.de/DocDL/sd-2020-digital-03-Fuest-et-al-corona-europa-2020-04-01.pdf>